

변호사시험 대비 제2회 모의문제(기록형)  
-공법/민사법-

【 편집자 주 】

법무부는 2011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지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각 로스쿨에서 실시했다. 첫날에는 공법, 20일에는 형사법시험이 실시됐으며, 21일에는 민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이, 22일에는 민사법의 기록형 시험이 시행되었다. 모의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대체로 이번 시험이 지난해 평이하게 출제됐던 것과 달리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대 로스쿨원생 000씨는“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상향된 느낌이었다”며 “특히 형사법이 공법에 비해 세부적인 학설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는 등 어렵게 출제되면서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고 평했다. 전반적으로 제2회 변호사 모의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 시험을 본 로스쿨 원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공 법

【문제】

1. 의뢰인 김관매는 게임문화진흥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이권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이권리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바,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어볼 만하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다.
3.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시오.

【유의사항】

1. 설문의 위 「게임문화진흥법」은 가상의 것이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률이 있다면 현행 법률에 우선하는 것으로 함.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는 이권리 변호사가 작성했던 날에 접수한 것으로 함.
3. 각종 서류 등에 필요한 서명과 날인 또는 무인과 간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4.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사 건 : ○○지방법원 2002가합0000 분담금

원 고 : 교통안전공단

피 고 : ○○해운(주)

신청인: 피고

**신청 취지**

“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I. 쟁점의 정리

II. 재판의 전제성

……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 여부는 현재 ○○지방법원 2002가합0000 호로 계속 중인 분담금청구소송에서의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III. 위 법률조항의 위헌 이유

IV. 결 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소송 대리인은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제3민사부 귀중

## 참고자료 2 - 게임문화진흥법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2. 게임물의 "수입"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된 게임물(게임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게임물"이라 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게임물을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3. 게임물의 "반입"이라 함은 외국게임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4. "게임물 제작업자"라 함은 게임물의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게임물 유통관련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게임물 유통업

- (1) 게임물 배급업 : 게임물을 수입(원판 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게임물의 유통을 주된 부분으로 하는 영업
- (2) 게임물 판매업 : 게임물 자체를 직접 판매 또는 배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나. 게임제공업 :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이용자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 (게임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등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을 수립하거나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①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연수기관이 자체교육·연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② 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1항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물 제작업 또는 유통관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지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제6조 (표시의무) ①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 등록번호,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 또는 출판사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에 한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기타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4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증 등) ① 등록청은 등록업자에게 그 업종을 구분하여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 ② 등록업자가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청은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9조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유통관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2. 게임물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연소자(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게임물 유통관련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게임물 유통관련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취소 등) ① 등록청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할 때
  3.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산게임물의 제작실적이 없을 때(제작업자에 한한다)
  8. 제3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오락제공을 하거나 유통 또는 오락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등록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유통관련업자에 한한다)
- ④ 등록청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게임물심의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게임물의 수입추천·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1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게임물의 수입) ① 외국게임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게임물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외국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 (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 또는 오락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전시회 등에 오락제공하는 게임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등급의 분류기준과 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소에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제1호 및 제3호의 등급만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이용가 :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8세이용가 : 18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③ 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쳐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통 또는 오락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게임물의 내용이 제21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의 충분한 내용검토 등을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오락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연소자에게 유통 또는 오락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판정을 위하여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 (재등급분류 등의 신청)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분류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등급분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급분류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등급분류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등급분류 등의 내용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급분류 등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① 위원회는 게임물에 관한 광고와 선전물이 배포·게시되는 경우에 연소자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연소자에 대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은 배포·게시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여부의 확인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자료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원회의 이 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폐쇄 및 수거조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제작 또는 반입된 게임물
- 2.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 기타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판매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위하여 게임물을 소지한 자
2.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게임물을 수입한 자
3.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오락제공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게임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추천 또는 제작추천을 받은 자
2. 제3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오락제공을 하거나 유통 또는 오락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공 판 기 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만료		미결구금  <b>24</b>
최종만료		
대행갱신 만료		

기 일	사건번호	2010고단4965	담 임	형사15단독	주 심	
1회기일						
1/12 A10	사 건 명	게임문화진흥법위반				
1/26 P2						
	검 사	엄한우	2010년 형 제12382호			
	피 고 인	김판매				
	공소제기일	2010. 10. 8.				
	변 호 인	변호사 이권리				

확 정		완 결 공 람	담 임	과 장	국 장	재판장	원 장
보존종기							
중결구분							
보 존							

접 수 공 랑	과 장	국 장	원 장
	(인)	(인)	(인)
<b>공 판 준 비 절 차</b>			
회부 수명법관 지정	일 자	수명법관 이름	재 판 장 비 고
<b>법 정 외 에 서 지 정 하 는 기 일</b>			
기일의 종류	일	시	재 판 장 비 고
1회 공판기일	2011. 1.	12. 10:00	(인)





##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10고단4965

2010형 제12382호

신청인 : 검 사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사 항 등	신청 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 사 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10		피의자신문 조서		1	1		○	기 재 생 략				
2	사경	14		압수조서		1	1		○					
3	사경	16		피의자신문 조서	기	1	1		○					
4	사경			압수된 게임 DVD (증제1, 2호)	재	1	1		○					
					생									
					략									

-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0. 10. 8.

사건번호 2010년 형제12382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공소장  
검사 정준배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김판매 (700115-1715****), 40세 직업 무직 주거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 등록기준지 경북 김천시 능라면 노아리 404
죄명	게임문화진흥법위반
적용법조	게임문화진흥법 제45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제46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3호, 제22조 제5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번호인	없음

###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1. 게임물심의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2009. 7. 1.부터 2010. 6. 3.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의 amazon.com 등의 사이트를 통해 폭력적이고 음란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화면들로 이루어진 'EXTRAME' 등 게임 DVD 500여장을 우송받아 외국의 게임물을 수입하였다.
2. 2009. 7. 1.부터 2010. 6. 3.까지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물심의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게임 DVD 300여장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game\*\*\*\*.co.kr)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3. 2010. 6. 3.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물심의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게임 DVD 중 팔다 남은 게임 DVD 219장을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III. 첨부서류

1. 긴급체포서 1통
2. 석방보고서 1통

검사 정준배 (인)

변호인선임신고서

피 고 인 김 판 매

사 건 2010고단4965(게임문화진흥법위반)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 권 리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연서하여 이에 신고함.

2010년 12월 20일

선임인 김판매 (인)

위 변호인 변호사 이권리 (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25 백조빌딩 313호

전화 597-2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5단독 귀중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 2010고단4965 게임문화진흥법위반

재판장 판사 조명판 기 일 : 2011. 1. 12. 10:00

장 소 : 제319호 법정

공개 여부 : 공개

법원주사 백진호

고지된

다음 기일 : 2011. 1. 26. 14:00

피 고 인 김판매

출석

검 사 엄한우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이권리

출석

재판장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김판매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에게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사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게임문화진흥법 '제45조 제3호, 제22조 제5항' 부분은 오기이므로, 삭제한다고 진술

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각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변호인

2011. 1. 4. 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진술

재판장

변론속행

2011. 1. 12.

법원주사 백진호 (인)

재판장 판사 조명판 (인)

# 증거서류 (검사)

※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으로 수사기록 중 일부가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것임.

제 1 권
제 1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b>증거서류등(검사)</b>					
<b>사 건 번 호</b>	2010고단4965	담임	15 단독부	주심	
	201 노		부		
	201 도		부		
<b>사 건 명</b>	게임문화진흥법위반				
<b>검 사</b>	엄한우	2010년 형제12382호			
<b>피 고 인</b>	김판매				
<b>공소제기일</b>	2010. 10. 8.				
<b>1심 선고</b>	201 . . . .	<b>항 소</b>	201 . . . .		
<b>2심 선고</b>	201 . . . .	<b>상 고</b>	201 . . . .		
<b>확 정</b>	201 . . . .	<b>보 존</b>			

제 1 책
제 1 권

구공판	<b>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증거기록</b>				
검찰	사건번호	2010년 형제12382호	법원	사건번호	2010년 고단4965호
	검사	엄한우		판사	
피고인	김판매				
죄명	게임문화진흥법위반				
공소제기일	2010. 10. 8.				
구속	불구속			석방	
변호인					
증거물	있음				
비고					

## 압 수 조 서

피의자 김판매에 대한 게임문화진흥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0. 6. 3.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 피의자의 주소지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김화섭은 사법경찰리 순경 김일택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한다.

## 압 수 경 위

2010. 6. 3. 피의자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피의자의 위 주소지에 임한 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별지 압수목록의 물품을 임의 제출하므로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압수함.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생 략			

2010. 6. 3.  
관 악 경 찰 서  
사법경찰리 경장 김화섭 (인)  
사법경찰리 순경 김일택 (인)

# 압 수 목 록

번호	품 명	수량	피압수자 주거 성명				소유자	비 고
			1	2	3	④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주거·성명	
1	게임 DVD (EXTRA ME)	139장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 김판매 (700115-1715***)				좌동	
2	게임 DVD (XXX fighter)	80장	상동				상동	



## 피의자신문조서

성 명 : 김판매

위의 사람에 대한 게임문화진흥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0. 6. 4. 관악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김화섭은 사법경찰리 순경 장원길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김판매  
주민등록번호는 700115-1715\*\*\* 만 40세  
직업은 무직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는 없음  
주거는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  
등록기준지는 경북 김천시 능라면 노아리 404  
연락처는  
자택 전화 : 02-88\*-\*\*\*1 휴대 전화 : 010-5\*\*-\*\*\*5  
직장 전화 : 없음 전자우편(E-mail) : 없음  
입니다.

사법경찰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예. 고지받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문 범죄전력이 있나요.  
답 2002.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실형 전과가 2회 더 있습니다.  
문 군대는 갔다 왔나요.  
답 육군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문 학력은 어떠한가요.  
답 \*\*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문 사회경력은 어떠한가요.  
답 군복무를 마친 후 약 1년간 직장생활을 한 이외에 특별한 경력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게임 DVD를 수입하여 유통한 일이 있나요.  
답 예, 게임 DVD를 수입하고, 제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팔았습니다.

- 문 언제 어디서 얼마나 수입한 것인가요
- 답 2009. 7. 1.부터 2010. 6. 3.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의 amazon.com 등에서 게임 DVD 500여장을 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게임물심의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았나요.
- 답 수입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 문 수입한 위 게임 DVD를 어떻게 하였나요.
- 답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 문 어떤 방법인가요.
- 답 인터넷에 game\*\*\*\*.co.kr이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외국 게임 DVD를 판매 한다면서 목록을 게시해 두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동아은행 관악지점에 개설된 제 명의의 40\*\*\*-81-025560 계좌로 대금을 받고, 게임 DVD를 보내줍니다.
- 문 팔지 못한 나머지 게임 DVD는 어떻게 하였나요.
- 답 팔려고 저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압수당하였습니다.
- 문 게임물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답 ‘EXTRAME’은 인육을 집어던지거나, 경찰관에게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고, ‘XXX fighter’는 게임의 진행에 따라 여성의 나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 그래서 추천을 신청하지 않고 수입을 한 것인가요.
- 답 그런 것은 아니고...
- 문 이상의 진술에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가요.
-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관 매 (무인)

2010. 6. 4.

관 악 경 찰 서

사법경찰리 경장 김 화 섭 (인)

사법경찰리 순경 장 원 길 (인)

## 피의자신문조서

성 명 : 김판매  
주민등록번호 : 700115-1715\*\*\*

위의 사람에 대한 게임문화진흥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0. 9.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23호 검사실에서 검사 정준배는 검찰주사보 정재기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하시오.  
답 성명은 김판매  
주민등록번호는 700115-1715\*\*\* (40세)  
직업은 무직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는 없음  
주거는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  
자택전화번호는 02-88\*-\*\*\*\*1  
등록기준지는 경북 김천시 능라면 노아리 404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다.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예. 고지받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피의자는 게임 DVD를 수입하여 유통한 일이 있나요.

답 예, 무허가로 게임 DVD를 수입하여, 제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팔거나, 집에 보관한 일이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서 얼마나 수입한 것인가요.

답 2009. 7. 1.부터 2010. 6. 3.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칠팔동 236 건실아파트 204동 1903호에 있는 저의 집에서 미국의 게임 DVD 500여장을 수입하여 300장 정도를 팔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고 이번에 압수당했습니다.

문 압수된 게임물은 어떤 것인가요.

답 EXTRAME이라는 게임 DVD 139장, XXX fighter라는 게임DVD가 80장입니다.

문 다른 게임 DVD는 수입하지 않았나요.

답 예, 요즘 EXTRAME하고 XXX fighter가 최고 인기게임이라 그것들을 수입한 겁니다.

문 게임물심의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았나요.  
 답 안 받았다고 경찰서에서 다 말했는데요.  
 문 왜 수입추천을 받지 않았나요.  
 답 게임들이 좀 폭력적이고, 야해서 수입추천을 신청해도 허가가 날 것 같지 않아서요.  
 문 어떤 방법으로 수입하였나요.  
 답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데, 저의 집에서 amazon.com 같은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해주면 집으로 우송되어 옵니다.  
 문 수입한 위 게임 DVD를 어떻게 하였나요.  
 답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문 등급분류도 받지 않았겠네요.  
 답 예.  
 문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을 유통한 것도 사실이네요.  
 답 제가 허가도 안 받고 게임물을 수입한 것인데, 당연히 등급분류를 안 받지요. 등급분류를 받을 생각이었으면 추천을 받아 수입했겠지요.  
 문 위와 같은 게임 DVD를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 보호를 위해서 수입추천제도, 등급분류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같이 추천 없이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면 우리나라 게임물 배급체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을 피의자는 몰랐나요.  
 답 용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문 더 이상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나요.  
 답 죄송합니다.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케하다.

진술자 김 판 매 (무인)  
 2010. 9.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정 준 배 (인)  
 검찰주사보 정 재 기 (인)

## 민사법

귀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 정의빌딩 410호에서 단독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최진호이다. 귀하는 2011. 1. 15. 김영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받고, 첨부서류를 자료로 받았다.

1. 김영철은 이진수로부터 아파트 1채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입주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는 박철민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가 마쳐져 있었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이진수는 김영철에게, 자신이 박철민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2,000만 원뿐이라고 하면서 잔금지급 시까지 책임지고 박철민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진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2010. 12. 24. 김영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도 않았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도 않았다. 현재 김영철은 이진수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다.
3. 김영철이 상세히 알아보니 위 근저당권은 이진수가 2008. 10. 1. 박철민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설정한 것이었는데 이진수는 그 원금은 물론 2009. 10. 1. 이래 현재까지의 이자도 전액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진수는 최근 들어서는 어디에 있는지 전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달리 연락할 방도도 없다.
4. 이진수는 박철민의 채권자 최두원으로부터 최두원이 박철민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채권을 모두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① 최두원의 박철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1억 5,000만 원
  - ② 최두원의 박철민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만 원. 단, 이에 대한 2009. 5. 1. 이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함.

김영철은 귀하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 달라고 한다. 귀하는 김영철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소장을 작성하되, 기록 내용에 비추어 피고(들)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주장 및 항변까지 고려하여 김영철이 일부라도 패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소장을 작성하시오.

### 작성요령

1. 본 기록 내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별도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지는 말 것.
2. 소장 작성일은 2011. 1. 22.로 할 것.
3. 예시로 제시한 소장의 형식을 참고하되, 소장의 기재사항 중 입증방법론과 첨부서류란은 생략하고, 청구원인에 증거는 표기하지 말 것.
4. 각종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전제할 것.